

검 토 보 고 서

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
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 주 시 의 회
전문위원 김형열

양주시 리·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·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□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

양주시 리·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
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
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적 으로 검토보고를
드리겠습니다

□ 본조례 개정 이유는

리·통반설치조례와 정원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
제4조 제5항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
를 위하여 행정구획 단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
리·통장의 정원을 정하는 조례입니다
금번 일부개정조례는 광적면 비암리 군부대 훈련장
수용지와 덕정2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지에 대하여
통·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

□ 주요 내용은

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

□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광적면 비암3리 전지역이 군부대 훈련장 부지로 편입되어서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민 주거단위로 구성되는 행정리인 비암3리 1내지 3반을 비암2리 1반으로 편입하여 반을 구성하고
- 덕정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정동701-3번지 를 고암1통 1반 으로 법정동을 달리하여 조정하는 하는 내용입니다
이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3항에서 “읍.면.동의 구역의 변경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
- 리·통·반 설치 및 조정은 기능을 극대화하고 행정 추진 전파의 효율성을 제고할수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, 지역의 지리·지형적 여건등에 적합한지

등이 감안 되어야 행정력이 원활히 투입될수 있을 것입니다

- 이에 따라서 「양주시 라·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라·통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광적면의 비암3리가 비암2리로 통합됨에 따라 비암3리장의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
- 본조례안등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 행정력 수행 투입 체계를 갖추는 조례안으로서, 우리시의 발전에 따라서 변경요건을 파악하여 행정력 전파에 적정 하도록 정비하여야 할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